

심사보고서

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3
----------	----

2022. 10. 21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7일

-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)

가. 제안사유

-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출연목적

-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·가족 정책 연구,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추진, 도민 및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

○ 출연 예정금액 : 1,404,795천원 (도비100%)

○ 출연내역 : 충북여성재단 운영비, 사업비

○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 : 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22년 당초예산 (B)	2023년 출연계획 (C)	증감 (D=C-B)
도비(100%)	1,444,795	1,404,795	△40,000

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가. 법적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.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(재정지원 등)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나. 종합의견

- 충북여성재단은 충청북도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7년 2월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
- 지역맞춤형 연구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유일의 성평등 교육·연구의 거점기관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출연은 타당함.
- 2023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천만원 감액되었으며, 주요원인은 인건비 기본급 자연증가분과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경비와 행사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분을 반영한 결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」

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83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5일
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대상기관 :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(17. 2. 17)된 기관으로,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출연 예정금액 : 1,404,795천원(도비100%)
- 출연 내역 : 충북여성재단 운영비, 사업비
- 기대효과
 - 도민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·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
 - 여성·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5. 기타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여성가족정책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이남희	유영상	유지영	220-3912

기관명	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 사 장 : 김 영 환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(현원/정원) 15/15 (주요사업)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·가족 역량강화 교육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, 성주류화 과제 컨설팅 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1,404,795천원(도비 100%)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				
	구 분	2022년 당초예산액	2023년 예산액*	재원별	
			계	도비출연금	순세계잉여금 등
계	1,550,960	1,510,960	1,510,960	1,404,795	106,165
※ 수탁기관 수익금 제외 :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,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					
출자·출연 필요성	○ 지역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.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※ 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				
지도감독 부서인권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여성재단은 대내외 여성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능동적·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 ○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한 여성·가족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·연구를 비롯, 충북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. ○ 특히, 2023년도에는 충북의 여성 고용환경 분석을 위한 연구, 청소년 노동환경의 현황 및 실태조사, 충북 젠더 아카데미, 성평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 등의 신규업무가 있으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조직을 강화하는 시기로, 이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 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인원 및 조직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(경영평가)

-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직원역량강화 교육계획 고도화
-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적정성 확보 노력

○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

- 세입세출외 현금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관리 철저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의 연구개발과 충북여성의 능력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
- '17년 설립, '18년~'20년은 출범 이후 재단 조직 안정화 및 정착 시기였으며, '22년 파견공무원 복귀완료와 함께 충북여성재단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, 여성의 권익 증진, 교육·연구,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,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
- 특히, 재단은 성평등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한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현안업무 및 신규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·추진 중이며, 보다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.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내역	2022년 예산액(최종) (C)	2023년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충북여성재단 운영	1,444,795	1,404,795	1,404,795	-	△4,00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북여성재단

설립근거	- 민법 제32조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			전화번호 : 043-285-2421			
주요연혁	- '17. 2. 17 : 충북여성재단 설립		기관형태	출연기관(재단법인)			
인원현황	계		정규직	2개 센터			
	34		15	19			
임원구성	구분	성명	소속 및 직위	기간			
	이사장	김○○	충청북도지사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박○○	충북 여성재단 대표이사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조○○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재임기간			
	선임직이사	고○○	전 충청북도 여성기획팀장	2021. 02. 17 - 2023. 02. 16			
	선임직이사	금○○	옥천자원봉사 센터장	2021. 02. 17 - 2023. 02. 16			
	선임직이사	김○○	설성어린이집 원장	2021. 02. 17 - 2023. 02. 16			
	선임직이사	김○○	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	2021. 02. 17 - 2023. 02. 16			
	선임직이사	김○○	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	2021. 02. 17 - 2023. 02. 16			
	선임직이사	박○○	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	2021. 03. 08 - 2023. 03. 07			
	선임직이사	박○○	충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	2021. 03. 08 - 2023. 03. 07			
	선임직이사	심○○	충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	2021. 02. 17 - 2023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연○○	충북일보 대표이사	2021. 02. 17 - 2023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유○○	동양일보 상임이사	2021. 02. 17 - 2023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이○○	충북여성정책포럼 대표	2021. 02. 17 - 2023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정○○	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장	2021. 02. 17 - 2023. 02. 16			
	당연직감사	이○○	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	재임기간			
	선임직감사	이○○	태성회계법인 대표	2021. 02. 17 - 2023. 02. 16			
조직							
주요기능	- 여성정책연구·개발,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, 지역 여성리더십 향상 및 역량강화,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,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100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1,444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20	2021	2022	재무현황 (백만원) '21.12.31기준	자산(A=B+C)	401
	예산액	1,393	1,423	1,550		부채(B)	20
	지출액	1,205	1,317	1,444		자본(C)	381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21.12.31.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2,219			2,187		32	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여성재단 출연	구분	출자	
주관부서	여성가족정책관		출연	1,404,795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, 민관 소통 역할 수행
-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의 중심 기능 수행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여성재단 운영
- 사업기간 : 2023. 1 ~ 12월
- 총사업비 : 1,510백만원(출연금 1,404백만원, 순세계잉여금 등 106백만원)
- 주요내용 : 충북여성재단 정책연구 및 교육사업, 성평등·일자리 사업
- 출연근거 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비고
합계	1,510		
운영재원	1,503		
인건비	852	- 재단 직원(15명),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 등)	
경비	265	- 복리후생비, 사무관리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회의운영, 집기구입 등	
사업비	386	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	
예비비	7		

※ 수탁기관(성별영향평가센터·여성긴급전화1366센터) 사업비 별도

□ 기대효과

- 지역 여성들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·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
- 여성·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충북여성재단은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, 도비 출연금은 재단 존립과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금액임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